

의안번호	2216263
의 퇴 인	김정호의원
회 답 일	2026.1.28.
추계번호	26B03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1항제5호의6 신설) 5의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기후위기(이하 “기후위기”라 한다)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의무규정
2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봄.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u>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u>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1조(공단의 사업)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2. 상세사유

- (안 제11조제1항제5호의6 신설)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기후위기²⁾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와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는 내용임
 -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코드: 7084-104), 기관운영경비(코드: 7084-204), 청사임차비(코드: 7084-206), 연구기관 및 케어센터 지원 사업비(코드: 4052-356) 등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의 출연금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출연금의 증가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안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현행법령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된 경력이 있고, 해당 업무를 고려할 때 해당 요인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³⁾

1)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의 변화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업무상 질병의 증가 규모와 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지출 증가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없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